

● 제32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3. 9. 4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 김기덕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1039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기덕 의원(찬성 29명)
- 나. 제안일 : 2023. 8. 14.
- 다. 회부일 : 2023. 8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시 공공화장실,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고자,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명확한 용어 정의 및 공공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

나. 주요내용

- ‘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(안 제2조)
-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.

다. 입법예고(2023.8.24.~8.28.) 결과 : 의견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용어정의 규정을 신설하고,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(안 제4제3항)

-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) ①·② (생략)	제4조(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- 경찰청¹⁾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2017년 2,617건으로 이후 일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던 시점임을 감안할 때 2021년에 1,792건으로 증가추세로 반등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.

<서울 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 현황>

년도	2017	2018	2019	2020	2021
발생 건수	2,619	2,135	2,033	1,490	1,792

- 또한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봐도 화장실 불법촬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.

- 시사저널, 2023.4.16.
날로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, 무엇이 문제일까 [김동진의 다른 시선]
- 노컷뉴스, 2023.5.23.
카페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'그놈'...또 범행하려다 '덜미'
- 중앙일보, 2023.6.9.
끊이지 않는다...같은 날 다른 지역서 잡힌 '女 화장실 불법촬영범'
- 한겨레, 2023.6.13.
“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불법촬영” 신고...인천교통공사 직원 수사
- 뉴시스, 2023.7.7.
화장실 몰카로 투숙객 불법 촬영 30대 게스트하우스 사장 '실형'
- 여성신문, 2023.7.25.
"불법촬영 재판 중 또 촬영"...화장실서 수차례 여성 촬영한 30대 남성 집행유예
- 뉴시스, 2023.8.27.
'긴 머리 가발 쓰고, 앵글 잡고' 화장실 불법촬영 20대 실형

1) 경찰청,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지역별 발생현황, 2021.12.31.

-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탐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- 개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

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, 시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며, ○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3.7.21.)에 따라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계장치 점검 의무(연2회)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상시점검 체계 강화가 필요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- 불법촬영 건수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동 조례의 상위법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²⁾

2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

에서 구청장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여부에 대해 연 2회이상 정기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바,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임.

- 한편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내 특별점검관리대상 화장실 등 민간개방화장실 위주로 시민참여 중심의 ‘불법촬영 시민감시단’을 운영하여 월 2회 상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‘안심환경 인프라’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촬영기기 적발 건수는 미미한 실정으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.

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.